

[사 건 명] 행심 2018 - 1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8. 4. 5. 1교시 종료 후 피해학생 □□이 책이 담긴 수레를 가지고 교무실로 심부름을 가던 중, ■■■ 학생이 피해학생을 막아서며 장난을 쳤고, 청구인 포함 5명의 학생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나. ■■■이 피해학생의 앞을 계속 막아서자 피해학생이 ■■■을 밀쳤고 화가 난 ■■■이 피해학생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떨어진 안경을 밟았다.

다. 심부름을 마치고 오는 피해학생을 ■■■이 2차 폭행을 하기 위해 기다렸고, 청구인과 ●●●, ▲▲▲, ⊕⊕⊕ 학생이 함께 기다렸다.

라. 피해학생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이 피해학생을 수차례 폭행하며 안경을 밟았고, 청구인과 ●●●, ▲▲▲, ⊕⊕⊕ 학생은 ■■■의 2차 폭행 장소까지 동행하여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마. 2018. 04.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제대로 된 조사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하였고, 절차상 판단 근거, 반론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에 대해 설명 받지 못한 채 피해학생의 주장만 받아들여 판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 접수 보고 단계에서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부터 학폭위 개최일 까지 청구인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보호자가 CCTV확인을 했냐는 질문에 피청구인은 담당교사만 볼 수 있고 봤을 거라고만 대답하여 청구인측은 불명확한 답변만 들었다.

다. 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학생에게 ■■■이 장난을 거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은 우리 반 친구이니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청구인은 사건 당시 발가락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과 피해학생의 싸움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청구인도 2017년 ■■■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서 두려움에 두 학생의 싸움을 말할 수가 없었다.

라.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측 학부모가 대기하고 있는 교실에 청구인을

혼자 들어가게 하였고, 피해학생측 학부모가 청구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겁박하여 청구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관련 학생 부모님들께 통보하였고, 공정성 있는 판단을 위해 각 학생들의 경위서를 2회 이상 받아 청구인과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CCTV는 해당 학생안전부장이 확인하였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경찰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CCTV는 보여드릴 수 없음을 학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나. 청구인에게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측에서 청구인이 계속 등교를 하고 있음을 알고 2018. 4. 11.에 피해학생이 불안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학폭위를 열어 청구인에게 1일 출석정지 처분 조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 학생의 폭행을 말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 본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2차로 폭행하기 위해 기다리는 ■■■ 학생과 함께 기다렸고, 2차 폭행 장소로 동행한 사실로 인하여 본 처분에 이른 것이다.

라. 피해학생측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자치위원회에서는 사과할 수 있는 자리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사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는 사과할 의향이 있

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바빠서 먼저 갈테니 ◇◇이만 남아
서 사과를 하고 오라’ 고 말씀하신 뒤 학교를 나가셔서 청구인만 남
아 사과를 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이 피해학생측에게 사과를 하러 해당 실로 들어갔고, 학폭 담
당교사와 학생안전부장이 실 밖에서 청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곧
바로 해당실로 들어갔으며, 청구인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목격하자마
자 청구인을 일으켰고 피해학생측에게 부모님의 동의 없이 무릎을 꿇
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바. 본교 학생안전부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중
립적 입장을 견지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 조사와 자
료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처리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
구인의 부모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4. 5. 1교시 종료 후 피해학생 □□이 책이 담긴 수레를 가지고 교무실로 심부름을 가던 중, ■■■ 학생이 피해학생을 막아섰고, 청구인 포함 5명의 학생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으며, 당시 위 ■■■이 피해학생의 앞을 계속 막아서자 피해학생이 ■■■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이 피해학생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떨어진 안경을 밟았다. 이후 심부름을 마치고 오는 피해학생을 ■■■이 2차 폭행을 하기 위해 기다렸고, 청구인과 ●●●, ▲▲▲, ⊕⊕⊕ 학생 역시 함께 기다렸으며, ■■■은 피해학생이 교무실에서 나오자 피해학생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하였고, 청구인과 ●●●, ▲▲▲, ⊕⊕⊕ 학생은 ■■■의 2차 폭행 장소까지 동행하여 그 곳에서도 주변에 머물며 함께하는 등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게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 학생이 피해학생을 1차 폭행할 당시에 함께 있었고, 그 당시는 폭행을 제지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는 있었겠지만, ■■■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폭행을 위해 피해학생을 기다릴 때, 청구인등은 위 ■■■ 학생과 계속 함께 있었으며, ■■■ 학생이 피해학생을 2차 폭행 장소로 데리고 가는 동안에도 함께 동행하였고, 2차 폭행 장소에서도 주변에 있으면서 ■■■ 학생을 말리거나 선생님등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2차 폭행을 구경하는등 오히려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청구인등이 ■■■의 일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도록 한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

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단지 주변에서 보고 있었을뿐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할수 있지만,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거리를 두어 이를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등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